



창업보육센터 시행세칙

제정일	1999. 3.19
개정일	2022.12. 1
개정차수	6차
담당부서	창업보육센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세칙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2014.11. 1)

제 2조 (적용범위) 보육센터의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기타사항은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보육”이라 함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의 제공, 자금의 알선, 경영, 기술 및 세무에 관한 상담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여 운영함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보육센터와 입주계약을 맺은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
3. “입주개시일”이라 함은 보육센터 입주 계약서에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4.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보육사업 지원에 의하여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고 창업이 가능하게 됨을 말한다. (개정 2022.12. 1)
5. “퇴거”라 함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보육센터에서 퇴거조치 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출소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 제품 또는 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7. “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 2 장 운 영

제 4조 (입주부담금)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입주예치금, 보육료, 관리비(공과금 등),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 1)

제 4조의 2 (수익금의 출연) 입주업체가 성공적인 보육으로 성장하였을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연간 총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금 또는 주식으로 출연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9.28]

제 5조 (운영규정준수)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보육센터의 제반 운영규정 및 관련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센터는 적절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제 6조 (시설지원) 보육센터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가

능한 갖추어야 하며, 입주자는 필요할 경우 본교 내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조 (경영, 기술지도 및 연수) 보육센터는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지도,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 장 졸업 및 퇴거

제 8조 (졸업)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2. 1)

1. 제품개발과 시판의 성공으로 입주자가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3. 조기졸업 또는 퇴거신청은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 1)

제 9조 (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진행도 평가 결과,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5. 6. 1)
2. 보육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15. 6. 1, 2022.12. 1)
3. 소음, 환경 등 공해의 과다발생, 전기 과다사용, 근무인원 없이 장기간 사무실 방치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개정 2022.12. 1)
4.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보육센터의 보육사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 기타 보육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예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치 않거나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보육센터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 입주예치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 (강제퇴거의 경우에도 미납분은 입주예치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한다)

제 4 장 사업계획의 변경 및 점검

제10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2. 개발기술 또는 시제품 제작 품목.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서 및 계획서, 사유서를 보육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계획의 점검) ① 보육센터는 입주일 기준 매 1년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추진현황 및 이행여부를 평가(사업진행도 평가)하여 입주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일 기준 3년 만기되는 기업은 심사위원회에서 계속 보육 여부를 심의하여 4년차 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5. 6. 1, 2022.12. 1)

② 제 1항의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보육을 중단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③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사업계획 진척도 (개정 2014. 1. 1)

2. 경영 및 R&D 계획의 타당성 (개정 2014. 1. 1)

3. 사업화 가능성 여부 (신설 2014. 1. 1, 개정 2015. 6. 1)

④ 사업진행도 평가결과 60점이상 평가된 기업에 한해 계속보육 판정을 한다. (신설 2015. 6. 1)

제 5 장 사 후 관 리

제12조 (졸업자 지원) 보육센터 졸업자에 대하여 상호 협의 하에 창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 (기타) 본 운영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